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0. 5. 7 선고 2019가단1795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3. E

4. F

5. G

6. H

7. I

8. J

9. K

10. L

11. M

12. N

변론 종결 2020. 4. 23

판결 선고 2020. 5. 7

주 문

1. 원고에게,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1980. 9.25. 접수 제597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C은 3/17지분에 관하여, 피고 D,E, K, L, M, N는 각 2/17지분에 관하여, 피고 F는 6/187지분에 관하여, 피고 G, H, I, J은 각 4/187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가. 원고는 2009. 9. 11.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6.185/300지분에 관하여, 별 지목록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/2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1980. 9. 25. 접수 제59790호로 채무자 O, 채권최고액 500만 원으로 한 망 P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'라 한다)가 마쳐졌다.

다.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원고와 망 P 사이의 상거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 정된 것인데, 원고와 망 P의 상거래는 1983. 9. 10.경 종료되었고,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되었다.

라. 한편, P은 2012. 11. 13.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, 자녀들인 피 고 D, 피고 E, 망 Q, 피고 K, 망 R, 피고 M, 피고 N가 있다.

마. Q는 2011. 10. 7.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F, 자녀들인 피고 G, H, I, J이 있다. R은 1979. 3. 31.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L이 단독상속인이 되었다.

바. 원고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.

2. 적용법조

피고 C, D, E, F, G, H, I, J, L, N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150조)

피고 K, M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문혜정

별지